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6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. 6. 9.

발 의 자 : 김순점 의원(대표발의)

서경환, 김영길, 신성봉, 천병태, 이효상
권태호, 강혜순, 김경환, 이복희, 오세라

1. 개정사유

- 조례 구성 체계와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,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하며,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순화용어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용어의 뜻 정의 : 안 제2조
- 조문 체계 등 정비 : 안제2조2, 안제3조, 안제9조
 - “적용범위”에 관한 조문 신설(안제2조의2)
 - 반복규정 정비 및 인용 규정 명칭 구체화(안제3조)
 - 조문 구성 체계에 맞는 통합 배열(안제9조)
- “정의 용어” 사용 : 사망, 장애, 상해 등 (안제4조, 안제5조, 안제6조)
-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 정비 : 별지 서식

3. 근거법규
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
-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
-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4. 개정조례 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“따로 붙임”

5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2017. 6. 14. ~ 6. 20(7일간), 의견없음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위원의 직무상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보상금”이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사망 또는 상해(이하 “상해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.
2. “직무”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의원의 법적 업무를 말한다. 이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에 따른 국내 및 국외 공무여행을 말한다.
3. “사망”이란 직무로 인하거나 상해 또는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말한다.
4. “상해”란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를, “장애”란 그 중 심한 상태의 정도가 지속되는 상해를 말한다.
5. “유족”이란 의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사람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목의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주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.
 - 가.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)
 - 나. 직계존비속

제2조의2(적용범위)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3조(지급대상) ① 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상해 등을 당한 의원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「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4조(지급기준) 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산정한다.

1. 사망: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4에 따른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
2. 장애: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
3.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: 치료비 전액,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.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금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.

제5조(장애 및 상해기준)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애: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 까지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
2. 상해: 제1호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

제6조(청구 및 기한) ① 보상금의 청구자(이하 “청구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망: 유족. 다만, 유족의 우선순위는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2. 장애, 그 밖의 상해: 해당 의원 본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

② 청구자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.

1. 사망: 그 날부터 6개월 이내
2. 장애,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: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

제7조(지급결정) 보상금은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.

제8조(지급방법) 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.

제9조(심의회의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보상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

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급대상 여부
 2. 제6조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
 3. 지급액 결정
 4. 청구자에 대한 우선순위 유족의 적합성
 5.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.
1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
 2.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
 3. 의무직 공무원 1명
 4. 구 소속 관련 국장 중 1명
-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그 임기가 만료된 때는 제외한다.

제11조(간사) ①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

제12조(준용) 심의회 회의 운영, 위원의 위촉해제 및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점수	제 호	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			처리기간
					즉 시
보상대상의원	성 명		생년월일		
보 상 금 청 구 내 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 <input type="checkbox"/> 상해				
사 망 · 장 애 · 상 해 사 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					
심 의 회	(결정)				
심 의 결 과	(결정이유)				
	(심의위원 서명)				
<p>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</p> <p>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</p>		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회원의 직무상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</u>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<신 설></p> <p>1. "직무"라 함은 <u>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한다)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.</u></p> <p>2. "의정활동비"라 함은 <u>영 제33조의 규정</u>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3. "유족"이라 함은 <u>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)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"보상금"이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4조에 따라 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의 사망 또는 상해(이하 "상해 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.</u></p> <p>2. "직무"란 <u>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의원의 법적 업무를 말한다. 이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의 명에 따른 국내 및 국외 공무여행을 말한다.</u></p> <p><삭 제></p> <p>3. "사망"이란 <u>직무로 인하거나 상해 또는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말한다.</u></p> <p>4. "상해"란 <u>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를, "장애"란 그 중 심한 상태의 정도가 지속되는 상해를 말한다.</u></p> <p>5. "유족"이란 <u>의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사람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주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.</u></p> <p>가.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)</p> <p>나. 직계존비속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상금의 지급대상은 <u>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</u> 2. <u>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</u> 3. <u>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</u> 4. <u>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</u> <p>② <u>1항 각호의 "직무"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"공무상재해인정기준"에 준한다.</u></p> <p>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<u>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직무로 인한 사망이나,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(이하"시"라 한다)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 한 금액</u> 	<p>제2조의2(적용범위)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</p> <p>제3조(지급대상) ① 상금의 지급대상은 <u>별제3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상해 등을 당한 의원으로 한다.</u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「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제4조(지급기준) ① 보상금은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산정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사망: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4에 따른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</u>

현행	개정안
<p>2. <u>직무상</u> <u>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의원</u>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<u>상당한</u> 금액</p> <p>3. <u>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</u> 치료비 전액,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.</p> <p>② 제1항 <u>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</u>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.</p>	<p>2. <u>장애: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1년</u> 분에 <u>해당하는</u> 금액</p> <p>3. <u>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: 치료비 전</u> 액,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.</p> <p>② 제1항 <u>각 호에 따른 보상금이 중복될</u> 경우에는 <u>그 중 높은 금액을</u> 적용한다.</p>
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"장애"라 함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에 규정된 "장애등급"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</p> <p>② 제4조제1항제3호의 "상해"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<u>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</u>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	<p>제5조(장애 및 상해기준)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장애: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</p> <p>2. 상해: 제1호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 직무로 인한 사망,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: 사망 당시의 유족</p> <p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,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: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</p> <p>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,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1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.</p>	<p>제6조(청구 및 기한) ① 보상금의 청구자(이하 "청구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사망: 유족. 다만, 유족의 우선순위는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2. 장애, 그 밖의 상해: 해당 의원 본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</p> <p>② 청구자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.</p> <p>1. 사망: 그 날부터 6개월 이내</p> <p>2. 장애,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: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</p>
<p>제7조(보상금의 지급결정)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7조(지급결정) 보상금은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.</p>
<p>제8조(보상금의 지급방법)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.</p>	<p>제8조(지급방법) 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)의 구성 ① 직 무로 인한 사망·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 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 구(이하"구"라 한다)에 울산광역시중구의 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<신 설> 제10조 통합신설</p> <p>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<u>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의회의원 1인</u> 2. <u>구청 관련 국장중 1인</u> 3. <u>의무직 공무원 1인</u> 4. <u>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</u> <p>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9조(심의회)의 설치·운영 ① <u>구청장은 보 상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 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 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지급대상 여부</u> 2. <u>제6조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</u> 3. <u>지급액 결정</u> 4. <u>청구자에 대한 우선순위 유족의 적합성</u> 5. <u>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 <p>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 장이 되고 위원은 <u>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 람 1명</u> 2. <u>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</u> 3. <u>의무직 공무원 1명</u> 4. <u>구 소속 관련 국장 중 1명</u> <p><삭 제> 제2항제2호에 포함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통합 신설</p> <p><신 설> 제13조제2항이기</p> <p><신 설> 제13조제3항이기</p>	<p>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
<p>제10조(심의회 의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2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.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.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.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	<p><삭 제> 제9조제1항에 통합</p>
<p>제11조(심의회위원의 임기)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구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.</p>	<p>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그 임기가 만료된 때는 제외한다.</p>
<p>제12조(심의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<삭 제> 제9조제3항에 통합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심의회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</p>	<p><삭 제> 제9조제3항에 통합</p> <p><삭 제> 제9조제4항에 통합</p> <p><삭 제> 제9조제5항에 통합</p>
<p>제14조(심의회회의 회의) ① 심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</p> <p>② 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</p>	<p>제11조(간사) ①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</p> <p>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</p>
<p>제15조(수당과 여비) 심의회에 출석한 구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준용) 심의회회의 회의 운영, 위원의 위촉해제 및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</p>

의안번호 1367	[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-----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6. 9.(금)
- 나. 제출자 : 김순점 의원 외 10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7. 3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7. 10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(김순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1) 조례 구성 체계와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,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,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하며,
- 2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순화용어로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명에 맞는 용어의 뜻 정의 : 안 제2조
- 2) 조례 입안·심사 기준에 맞게 조문체계 등 정비
 - “적용범위”에 관한 조문 신설 : 안 제2조의2
 - 반복규정 정비 및 인용 규정 명칭 구체화 : 안 제3조
 - 조문 구성 체계에 맞는 통합 배열 : 안 제9조
- 3) 사망, 장애, 상해 등 용어 정의 : 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6조
- 4)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 정비 : 별지 1호, 2호서식

다. 근거법규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
- 2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
- 3) 법령 입안·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정미옥)

-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,
 - 조례의 구성 체계를 법령 입안·심사 기준에 따른 재정비와
 -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,
 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, 순화용어 등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입법의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